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 조항 이동(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의2제1항)

- 1) 제21조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안 제21조의2제1항)

나. 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항)
- 2) 청년보좌역은 청년 인식 파악 및 의견 수렴, 관련 자문단의 운영, 청년의 국정참여 촉진, 기관장 지시사항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제3항)

- 3) 청년보좌역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 함께 면직되도록 함(안제4항)
- 4)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규정함(안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5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하 “청년보좌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③ 청년보좌역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과제에 대한 청년의 인식 파악과 의견 수렴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단의 운영

3. 청년의 국정 참여 촉진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간의 업무협조 등

④ 청년보좌역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⑤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

건을 수렴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5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하 “청년보좌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청년보좌역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과제에 대한 청년의 인식 파악과 의견 수렴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단의 운영

3. 청년의 국정 참여 촉진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간의 업무협조 등

④ 청년보좌역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하고,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⑤ 청년보좌역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연 락 처	(044) 200 - 1986